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DMH 및 DPH-SAPC
 행동 건강 서비스법 지역사회 기획 팀(BHSA CPT) 회의
 참여자 의견 |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배경

BHSA CPT 회의(25/11/18)에서 참여자들은 임대인 지원 활동 및 완화 및 참여 지원을 위한 자금 사용 방법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래 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주거 문제 전문가(SME)들이 본 제안 사항들을 검토한 후 2026년 1월 20일에 열리는 BHSA 통합 플랜 포럼에서 참고 목록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파트 4: 집주인 지원 및 완화 기금(챕터 7, 섹션 C.9.4.1)	
1.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a.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장벽을 낮춰주는 집세 납부 시스템에 투자하도록 돕는다.
	b. 저장 강박과 관련한 주거 청소 자금을 제공한다.
	c. 퇴거 또는 주거 공간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단기 임차인 안정화 지원에 자금 사용을 허용한다.
	d. 인센티브 및 피해 완화 프로그램 관리와 연계된 행정 비용의 사용을 허용한다.
	e. 임대인에게 유지 보수 지원금을 제공한다.
	f. 임대인의 위험 부담을 보상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g. 임대인 지원 활동 완화 자금을 제공한다.
	h. 임대인이 주거지 점검 절차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i. 자금을 유연하게 만들고 모든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j. 주거 공간에 기본적인 가구를 제공한다.
	k. 임차인 유지 및 임차인 만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l. 예약 비용을 없앤다.
	m. 임대인에게 빈 주거 공간에 대해 보상한다.
	n. 배상 문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의 판단을 활용한다.
	o. 조기 임대 종료를 보상하는 자금을 확보한다.
	p. 주거 공간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제공한다.
	q. 모든 주거 제공자가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r. 임대인들이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주거 지원 안내 및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 임차인의 웰빙을 지원하는 주거지 개선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t. 주거 공간이 손상되거나 임차인의 문제가 재발되었을 경우 배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제공한다.	
2. 주거지 개선 및 주거 적합성	a. 강화된 점검 또는 주거 공간 준비에 필요한 경미한 비용에 자금 사용을 허용한다.
	b. 농촌 주택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만든다.
	c. 임대인에게 유지 보수 지원금을 제공한다.
	d. 임대인이 주거지 점검 절차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DMH 및 DPH-SAPC
 행동 건강 서비스법 지역사회 기획 팀(BHSA CPT) 회의
 참여자 의견 |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파트 4: 집주인 지원 및 완화 기금(챕터 7, 섹션 C.9.4.1)	
	e. 장애인, 성소수자(LGBTQIA), 유색인들이 접근 가능한 주거 공간을 확보한다.
	f. 주거 공간의 주거 적합성 점검 책임자를 확인한다.
	g. 주거 공간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제공한다.
	h.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안전한 휴식 공간 또는 공용 공간을 포함한다.
	i. 임차인의 웰빙을 지원하는 주거지 개선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j. 청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훈련, 교육, 문화적 역량	a. 임대인에게 주거 우선 정책(Housing First), 공평한 주거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b. 모든 직원들이 정신 건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편견을 줄인다.
	c. 지역사회 기반 단체(CBO)를 참여시켜 지원이 부족한 문화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접근하도록 한다.
	d. 직원들을 교육하여 편견을 방지한다.
	e. 임대인에게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f. 문화적 역량과 SUD/정신 건강 교육을 포함한다.
	g. 결정권자가 2주 동안 장애 급여만으로 생활해 보는 경험을 의무화한다.
	h. 일대일 정신 건강 교육을 제공한다.
	i. 영적 신념, 식문화 관행, 가족 규범, 기술 사용에 대한 문화적 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j. 정신 건강 응급 처치 및 자살 예방과 같은 정신 건강 지원 교육을 제공한다.
	k. 임대인과 부지 관리자를 위한 지역 연계 가이드와 DMH 교육을 개발한다.
4. 임대인 지원 및 주거 지원 안내	a. 지역사회 기반 그룹을 활용해 임대인, 임차인, 주거 관리 기관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한다.
	b. 단일화된 접근법보다는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c. 보호 대상자에게 자원 안내 전문가를 배치한다.
	d. 임대인에게 퇴거 절차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e.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통을 조정하는 제3자 지원을 제공한다.
	f. 서로 잘 맞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g. 임대인의 문의와 지원을 담당할 옴부즈맨(조정관)을 제공한다.
	h.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i. 지원 활동 팀에 번역 지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j. 임대인이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k. 지원 팀 및 사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l. 건물 내에 현장 공중 보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m. 지원 상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DMH 및 DPH-SAPC
 행동 건강 서비스법 지역사회 기획 팀(BHSA CPT) 회의
 참여자 의견 |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파트 4: 집주인 지원 및 완화 기금(챕터 7, 섹션 C.9.4.1)	
5. 정책 및 책임	n. 임차인이 주거 공간을 훼손하거나 임차인의 문제가 재발되었을 경우 연락 가능한 담당 연락처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제공한다.
	a. 임차인뿐만 아니라 사례 담당 관리자 및 직원들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
	b. 승인 비율과 인구 통계적 차이를 기반으로 주거 차별 문제를 평가한다.
	c. 지원받는 개인을 추적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d. 임대료 인상 상한 적용을 위한 참여 조치를 시행한다.
	e. 예약 비용을 제거한다.
	f. 도심 개발 담당 부서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간소화한다.
	g. 임대인과 개발업자들을 위한 규정을 재검토한다.
	h.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6. 평등, 접근성, 포용성	a. 지역사회 기반 단체(CBO)가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 이민자, 라틴계,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b. 임대인을 위해 언어 및 문화적으로 조정된 자료를 제공한다.
	c. 장애인, 성소수자(LGBTQIA), 유색인들이 접근 가능한 주거 공간을 확보한다.
	d. 지원 활동 팀에 번역 지원을 포함한다.
	e.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안전한 휴식 공간 또는 공용 공간을 포함한다.
	f. 다양한 임차인의 필요에 따른 문화적 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7. 주거 프로그램 및 자료	a. 합리적 편의 제공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b. 보호 대상자에게 자원 안내 전문가를 배치한다.
	c. 제3자 수령인을 위한 재정 관리 지원을 제공한다.
	d. 카운티의 임대 계약 공동 서명 여부를 명확히 밝힌다.
	e. 주거 공간에 기본적인 가구를 제공한다.
	f. 소외된 인구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한다.
	g. 건물 내에 공중 보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h.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i. 트라우마를 고려한 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j. 지원 팀 및 사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k. 지원 상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점검 및 규정 준수	a. 강화된 점검 또는 주거 공간 준비를 위한 자금 사용을 허용한다.
	b. 임대인이 주거지 점검 절차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 이용 가능한 주거 공간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d. 유닛의 주거 적합성을 점검하는 담당자를 확인한다.
	e. 임대인과 개발업자들을 위한 규정을 재검토한다.
	f. 점검과 관련한 책임 절차를 구축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DMH 및 DPH-SAPC
 행동 건강 서비스법 지역사회 기획 팀(BHSA CPT) 회의
 참여자 의견 |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파트 5: 참가자 지원 기금(챕터 7, 섹션 C.9.4.2)	
1. 임차인 훈련 및 교육	a. 임차인은 임차인 책임 교육을 받아야 한다.
	b. 주거 선택지, 문제 제기 방법, 임차인 멘토링, 주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워크숍이 제공되어야 한다.
	c. 참여자는 강의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d. 참여자는 개인적 재정 및 예산 세우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e.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 자료 안내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f. '임대차의 기초(Tenancy 101)' 온라인 교육 동영상에 있어야 한다.
	g. 참여자는 신용 점수 회복 지원을 받아야 한다.
	h. 참여자는 자립을 위한 직업 코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정 지원	a. 기존 보관 비용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b. 참여자 지원 자금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c. 보관 비용은 지원되어야 한다.
	d. 자금은 접근성 개선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e. 고령자에게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f. 반려동물 보증금 및 반려동물 비용은 모든 참여자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g. 주차 비용은 지원되거나 할인되어야 한다.
	h. 참여자가 전기·수도 등 공공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i. 자금은 참여자에게 유익한 활동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j. 자금은 참여자의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하는 활동에 제공되어야 한다.
3. 주거 접근성, 안정성, 퇴거 예방	a. 퇴거 예방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b. 퇴거 지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c. 주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이동식 위기 대응팀이 있어야 한다.
	d. 성소수자(LGBTQ+)용 주거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
	e. 미국 장애인법(ADA)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있어야 한다.
	f. 중요 문서는 미국 장애인법(ADA)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g. 주거 접근성을 논의할 때 위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h. 지역별 격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4. 부지 관리 및 지원	a. 지속적인 주거 공간 관리 및 청소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b. 자금은 정기적인 유지 보수 및 유지 관리 점검을 지원해야 한다.
	c. 청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지원 서비스 및 절차 안내	a. 간병인 서비스가 확장되어야 한다.
	b. 서류 작성 절차 안내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c. 임대 계약 및 임대임-임차인 간 소통에 번역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d. 임차인 지원을 담당할 옴부즈맨(조정관)이 있어야 한다.
	e. 공용 공간에서 지역사회 야외 활동이 있어야 한다.
	f. 서비스는 주거 배치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및 SUD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DMH 및 DPH-SAPC
 행동 건강 서비스법 지역사회 기획 팀(BHSA CPT) 회의
 참여자 의견 |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파트 5: 참가자 지원 기금(챕터 7, 섹션 C.9.4.2)	
6. 교통편	a. 교통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b. 노스 카운티~잉글우드 노선 등, 부족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7. 평등, 권리, 문화적 포용성	a. 참여자는 언어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이민자는 권리 정보를 이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c. 성소수자(LGBTQ+)용 주거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8. 직원 채용 및 시스템	a. 자금은 주거 전환 중 업무량, 월급, 직원 채용 기대치를 지원해야 한다.
	b. 목록에 적힌 모든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c. 주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이동식 위기 대응팀이 있어야 한다.